
2018년도 태백시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처 분 요 구 서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원)	
계				계 시정 14 주의 5 통보 2	계 추징 회수 감액	***,*** **,*** **,*** ***,***	계 훈 계 ** 경징계 *
1	☆☆과	'15~'18	임시기구 설치·운영 부적정	주의			훈 계 *
2	★★과	'15~'18	▷▷제 행사 추진 부적정	시정			훈 계 *
3	○○과	'15~'18	택사·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업무 소홀	시정	회수	*,***	훈 계 *
4	●●과	'15~'18	민방위 비상계획 수립 및 교육 훈련 등 관련업무 소홀	시정			훈 계 *
5	◎◎과	'15~'18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시정			훈 계 *
6	◇◇과	'15~'18	농지관리 업무처리 소홀	시정			훈 계 *
7	◆◆과 □□과	'15~'18	⊗⊗복지 법인 및 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시정	회수	***	훈 계 *
8	△△과	'15~'18	의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9	▲▲과	'15~'18	건설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 소홀	통보			훈 계 * (10병합1)
10	▲▲과 ▽▽과	'16~'17	■■리 경관개선 특화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훈 계 * 경징계 * (9병합1) (20병합1)
11	▼▼과	'15~'18	지방세 부과·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	-
12	▲▲과	'16~'18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지침 마련	통보			-
13	▲▲과 외 5개부서	'15~'18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부적정	시정			-
14	▲▲과 외 12개부서	'15~'18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권리·손해 보전 소홀	시정			훈 계 *
15	◇◇과	'15~'18	농업경영인단체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주의			훈 계 *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원)	
16	◁△과	'15~'18	⊙⊙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감독 업무 부적정	시정	감액	**,***	-
17	○○과	'15~'18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훈 계 2
18	▽▽과	'15~'18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소홀	시정			훈 계 1
19	★★과	'15~'17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부 적정	주의			-
20	★★과 ◀△관	'15~'18	건축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 부적정	시정			훈 계 2 (10병합1)
21	○○과	'15~'18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	훈 계 1

[일련번호 : 1]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시기구 설치·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담당(현 ◆◆과장) 지방⊖⊖ A

내 용

지방■ B은 2015. 1. 19.부터 2017. 6. 26.까지 인사업무 책임자, 지방☆
☆ A은 2016. 7. 1.부터 2017. 7. 2.까지 인사업무 실무책임자, 지방☆☆ C은
2017. 7. 10.부터 2018. 1. 9.까지 인사업무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며,
2017. 1. 24.부터 2018. 9. 19.까지 한시기구인 ♠♠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업무
를 담당하였다.

1. 한시기구 설치·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과 업무량(최소 1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8. 2. 20. 대통령령 제2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르면,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군에서 5급 이상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태백시(☆☆과)는 2017. 1. 24. 태백시의 자연자원과 연계한 미래먹거리로 향노화 및 실버산업의 중점육성을 위하여 ♠♠단을 설치하여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고, 2017. ×. ×.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한시기구의 업무분장 내용이 상시기구(♡♡과 ♥♥담당)에서 대부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시기구 설치가 부적합하고, 민자사업 등의 추진은 필요 시 인원을 증원하여 기존의 상시기구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강원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5급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존 상시기구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2017. 6. 23. 한시기구와 동일한 내용의 임시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단, 임시기구(T/F) 설치운영” 문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고, 2017. 7. 3. ☞☞급 D를 ♠♠단장에 발령하는 등 강원도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2017. 7. 3.부터 2018. 9. 19.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임의로 한시기구인 ♠♠단을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직무대리 지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예정 인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결원+퇴직인원-신규임용예정인원”의 식으로 산정하되,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태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를 두며, (구)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되,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가 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직무대리자가 본인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인원을 포함한 승진예정인원 만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직무대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태백시(☆☆과)에서는 2017. 6. 27. “♠♠단(TF) 설치운영” 문서를 생산하면서, ♠♠단장(♣♣급) 임명에 따라 ♣♣급의 초과 현원 발생이 우려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장 또는 ⊙⊙장) 중 1명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17. 7. 3. 인사발령 시에는 결원 4명에 2017. 12. 31. 퇴직예정인원 1명까지 모두 5명을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 후 직무대리로 발령한 후 결원 발생 시 승진임용 하였다.

그런데 2018년 1월 정규인사 시에는 ♠♠단장 임명에 따른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또다시 최소 1명의 퇴직예정인원이 필요하였으나, 2018.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전 E ◆◆시장이 ■■ 출마를 위하여 2018. 3. 15.자로 퇴임) 퇴직예정인원을 승진예정인원으로 포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태백시(☆☆과)에서는 2018. 1. 3. “부서장 직무대리 검토보고” 문서를 통하여 ‘부서장 공백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하여 직무대리 지정’을 검토·보고 하면서 ☞☞급에 결원이 없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이 불가함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대리(지정대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고,

2018. 1. 9. 인사발령 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없이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있던 F를 지정대리로 하여 ●●장 직무대리로 발령하였다.

또한 위 F는 ●●장의 직무대리라는 이유로 2018. 5. 25.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됨으로써 직무대리 자체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한시기구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강원도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시고, 직무대리로 하여금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제 행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현 ☆☆과장)	지방☆☆	G
	② 태백시 ★★과(현 ☆☆과)	지방⊖⊖	H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I
	④ 태백시 ★★과(현 ㉠㉠동)	지방⊖⊖	J
	⑤ 태백시 ★★과	지방⊖⊖	K

내 용

지방☆☆ G은 2016. 1. 11.부터 2018. 7. 4.까지 ▷▷제 행사 책임자로서, 지방⊖⊖ H은 2015. 12. 12.부터 2017. 7. 10.까지, 지방⊖⊖ I는 2017. 7. 10.부터 2018. 9. 18.까지 ▷▷제 행사 추진 업무담당으로서, 지방⊖⊖ J은 2015. 7. 27.부터 2018. 1. 9.까지, 지방⊖⊖ K는 2018. 1. 10.부터 2018. 9. 18.까지 동 행사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태백시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토문화 축제인 ‘▷▷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조 제2항 관련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등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행사)는 민간이 스스로 행하는 축제(행사)이어야 하며, 위 관서가 주최가 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사실상 추진하는 행사(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표 1]과 같이 ▷▷제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에 행사개최 예산 중 일부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하였으며,

[표 1] ▷▷제 개최 관련 예산편성 현황

특히, 보조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한 보조금은 위 관계부서의 실무담당 직원이 위원회 명의의 통장, 보조금 전용카드, 도장(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관리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품의 및 대금지급 등 회계사무 일체([표 2]),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등 보조사업자가 하여야 할 모든 사무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였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표 2] ▷▷제추진위원회 민간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특히, 위 사항은 지난 2015. 5. 20.부터 5. 27.까지 실시한 “2015년 태백시 종합감사”시 ‘▷▷제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권으로 지적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5. 7. 14. 감사결과가 통보되었으나,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제추진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 운용 부적정

태백시(★★과)에서는 「▷▷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

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시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위 관서에서 운용하는 「▷▷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운용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조례 제7조에는 ▷▷제추진위원회가 ▷▷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예산편성·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태백시에서는 위 내용의 상위법령 위배여부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행사관련 예산 중 일부를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추진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편성을 금지하고,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보완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잡비·기타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3]과 같이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예비비 *,***천 원을 계

상하였으며, ▷▷제 부대행사인 ■■■대회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민간인의 상해 치료비는 태백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편성한 예비비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표 3] 제회 ▷▷제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집행계획**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 해당 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센터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제공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고 질서유지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4]와 같이 ▷▷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한 보조금에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의 식비 및 격려금, 행사지원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 식비, 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4] 보조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 집행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 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태백시에서 사실상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업무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현 ㉠㉠과) 지방㉠㉠ L
② 태백시 ○○과(현 ㉡㉡소) 지방㉡㉡ M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N
④ 태백시 ○○과 지방㉢㉢ O

내 용

지방㉠㉠ L은 2015. 10. 19.부터 2018. 9. 18.까지, 지방㉡㉡ M은 2015. 6. 16.부터 2016. 1. 10.까지, 지방㉢㉢ N은 2016. 1. 11.부터 2017. 7. 9.까지, 지방㉢㉢ O는 2017. 7. 10.부터 현재까지 각각 ○○과에서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로서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태백시(○○과)에서는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 택시 보조금지급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의 사업 폐지, 휴지,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법인택시 *개 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 **명에 대하여 2015. 12. 11. 처분한 보조금 지급정지 내역을 2016. 1. 1.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늦게 입력하여, 그 지연기간 동안 ***회에 걸쳐 충전한 유가보조금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2] 택시 행정처분 기간 유가보조금 부당지급 내역

2.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 조사 소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①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②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③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④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심사과

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일정기간(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2015. 5월부터 2018. 3월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표 3]의 ‘2시간이내&80리터 초과 충전’ 및 ‘지역평균 2배 초과’건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 등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총 *,***,***원(**회 충전)의 보조금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였다.

[표 3]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현황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 조사 소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2. 6. 18. 제정) 제27조, 제29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체조사 등 과정에서 ① 1시간 내 3회 이상 또는 일 4회이상 주유 ② 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③ 주유패턴이상 등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조

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일정기간(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되는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및 지급정지 처분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2015. 5월부터 2018. 3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표 4]의 ‘1일 4회이상 주유’,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초과주유’건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 등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총 *,***,***원(**회 주유)의 보조금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였다.

[표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현황

4. 택시 부제일 주유(충전) 내역 조사 소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에 따르면, 택시인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제일에 주유 받는 행위(다만, 차량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사업용으로 유류를 주유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택시 부제일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유를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중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중 부제일 주유내역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내역을 확인한바, 택시 부제일(3부제)에 따른 택시별 운행일자 등 부제일 유류구매카드 사용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택시 부제일 유류카드 사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2015년 강원도종합감사 시 **대 **회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기간에 법인택시 *개 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 **명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②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택시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 **건 및 화물차 부정수급의심거래내역 **건에 대하여는 소명서 요구 등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및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③ 택시 부제일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택시 및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민방위 비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 관련업무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과 (현 ◇◇과) 지방○○ P

내 용

지방○○ P은 2015. 6. 16.부터 2018. 1. 10.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무담당자로서 민방위대원 임무고지, 통지서 수령증 관리, 불참자 및 면제자 처리 등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별 담당자가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백시에서는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보관 소홀,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임무 고지 소홀, 민방위 대원명부를 민방위대장에게 통보 소홀, 민방위 훈련 불참자 관리 소홀,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및 면제자의 증빙자료 보관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민방위 필수장비 관리 소홀,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1.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미수립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민방위 업무 지침」 (행정안전부) 4. 민방위 시설 장비 지침(I~II.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따르면 비상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를 주목적으로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하고 특정지역 편중 없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매년 1월중에 민방위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4.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Ⅲ. 비상급수시설)에 따르면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매년 1월중에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물 관리부서의 전시급수계획에 반영시 별도 작성 불필요)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매년 1월중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및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종합감사 중 태백시의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및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확인한바, 민방위대피계획은 2018년도만 수립하였고, 비상급수계획은 태백시 총무계획에 반영되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2.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업무 소홀

가.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회수 및 보관 소홀

「민방위 기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고, 본인이 없을 경우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미확보 시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실시 후 서명 및 날인된 통지서의 수령증 및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육당일로부터 3년 이상 보

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대, 8개동)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성실히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745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교부하면서 *,***명(**.*%)의 수령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표 1]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보관 내역

나. 지역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고지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민방위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발생시 민방위 대원의 동원업무 등을 위해 민방위 자원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대, *개동)에서는 [표 2]와 같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명(**.*%)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표 3]과 같이 ***명(*.*%)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 2] 민방위대 소속·임무 고지 내역

[표 3] 민방위대원 명부 민방위대장 통보 내역

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경고 및 보충교육 통지서가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야 했다.

한편, 태백시 강원도종합감사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와 참석자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명의 교육훈련 불참자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태백시(●●과)에서는 교육훈련 불참자가 없는 것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교육훈련 불참자 *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표 4]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명단

라.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르면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③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등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소증명,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군수)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한 **명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2015년 *명, 2016년 *명, 2017년 *명, 2018년 *명의 면제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난예방복구 참여 등 증명자료가 없는데도 교육훈련을 면제 처리하였다.

또한, 민방위대원 Q(19××.××.××.)의 경우,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으로 증명서류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 면제에 한정하여야 하

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교육훈련 면제자로 처리하였다.

[표 5]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 중 증명자료 미보유 현황

3. 민방위 필수장비 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점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및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4.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그 중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은 필수장비로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창고를 확보하여 장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건전지, 구급약품 등 소모품의 내구연한을 점검하고 사용기간이 초과된 소모품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분기 1회 이상 장비수량 및 상태 점검 및 점검일지를 기록유지 하는 등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감사기간 중 태백시 주민대피시설인 ‘관’에 보관 중인 필수장비 6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이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은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자메가폰은 배터리 비치수량이 부족하였고, 지휘용앰프는 관리상태 불량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응급처치세트는 구급약품의 유효기간이 초과된 채로 비치되어 있었다.

[표 6] 민방위 필수장비 점검결과 및 사진

4.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소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지하 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정비하여야 하고,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전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공용 지정시설은 수질 불합격 시 지정 해제 및 수질 양호시설로 대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인 ‘ㄱ’음수대 및 ‘ㄴ’음수대에 대하여 매분기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공용 음용수 시설에 대하여는 소독·살균 처리하여 검사를 재의뢰하거나 즉시 비상급수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수질 양호시설로 대체 지정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2015년 3분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표 7]과 같이 비상급수시설 음용수인 ‘ㄱ’음수대는 2016년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8. 6월에서야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여 음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ㄴ’음수대는 2015년부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8년 현재까지도 음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표 7] 비상급수시설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내역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교육훈련 불참자 *명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 발송여부 및 수령증 보관 등을 확인하고 소명을 받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② 교육훈련 면제자 중 증빙자료가 없는 **명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명 및 조사를 통하여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③ 민방위 필수장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체 및 보강하시기 바라며, 비상급수시설 중 ‘ㄴ’음수대는 음용 가능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매년 1월중 민방위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및 수령증을 3년 이상 보관하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를 고지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민방위 대원명부를 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현 ●●과) 지방○○ R
② 태백시 ○○과(현 ☒☒과) 지방○○ S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T
④ 태백시 ○○과(현 ⊕⊕동) 지방⊗⊗ U

내 용

태백시 ●●과 지방○○ R은 2015. 1. 19.부터 2017. 2. 19.까지, 태백시 ☒☒과 지방○○ S는 2015. 6. 16.부터 2017. 2. 19.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태백시○○회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정산 등 업무의 담당이었고, 태백시 ☒☒과 지방○○ T은 2015. 6. 16.부터 2018. 9. 16.까지, 태백시 ⊕⊕동 지방⊗⊗ U는 2015. 1. 19.부터 2017. 9. 25.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태백시○○회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교부·정산 등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태백시(○○과)에서는 태백시○○회에 체육회 인건비 및 법정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과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도단위 체육대회 단복 제작·구입 시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5. 1. 22.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5. 1. 5.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태백시○○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50회~제53회 ○○대회, 제24회~제25회 ※※대회 참가 선수단 및 임원단복을 제작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제품을 선정하여 구입업체에 계좌입금하거나 카드결제하는 방식으로 **건 ***,***천 원을 지방계약법령을 미적용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1] ○○대회 및 ※※집대회 단복 구입내역

2. 지방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8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부터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법령 및 교부결정내용과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관계서류가 미비 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태백시○○회에 ○○회 인건비 및 법정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

2]와 같이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짧게는 *일에서 길게는 ***일을 지연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하였고, [표 3]과 같이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 **건, 2016년에 **건, 2017년에 *건의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통보를 하지 않았다.

[표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일수 현황

[표 3]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 미통보 내역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보조금 보조사업자로서 물품을 구입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제품 및 업체를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태백시○○ 직원에 대하여 태백시○○에 문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시고,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토록 하고, 정산검사 후 보조금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강 원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지관리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과 지방田田 V

내 용

태백시 ◇◇과 지방田田 V은 2015. 9. 24.부터 2018. 9. 2.까지 ◇◇과에서 불법 전용농지의 사후관리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실무 담당자로 근무 하면서

1.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조치 소홀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벌칙) 내지 제59조(벌칙)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 농지로 회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1] 과 같이 불법 농지전용 3필지(2,130 m²)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명령이후 농지로 복구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 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적게는 360일 많게는 901일 동안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표 1]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후 방치 내역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농지법」 제36조(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主) 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농지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농지로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이 끝

나면 농지로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현장사무소 및 광산 진출입로로 일시사용허가를 처리하면서 농지복구에 필요한 복구비가 감사일 현재까지 예치되지 않고 있으며, 일시 사용기간이 2017. 12. 31. 종료된 태백시 ㉠동 ××번지에 대하여는 ***일이 경과하도록 농지로의 복구 또는 사용기간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표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복구비 미예치 및 미복구 내역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원상회복 명령 후 방치되고 있는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이를 미 이행할 시 고발,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농지는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노인복지 법인 및 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및 □□과

훈계대상자 태백시 ◆◆과(현 ⊕⊕동, 지방☒☒) 지방☒☒ W

내 용

지방☒☒ W는 2014. 2. 17.부터 2016. 7. 1.까지 태백시 ◆◆과 ‘⊖⊖시설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시설에서 ⊖⊖시설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장기요양 기관 특정 목적사업 적립금 운용·관리, ⊖⊖시설 후원금 사용,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시설 주요 식자재 구입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태백시(◆◆과 및 □□과)에서는 관내 소재 ⊖⊖시설(⊗⊗시설, ⊖⊖요양기관 등) 및 복지재단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법인을 적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및 「⊙⊙재단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시설장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상근의무가 있고,

○○재단은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그런데, 태백시(◆◆과 및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2011. 1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국장 등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공립 태백시○○관의 시설장(장형만)이 재단법인 ○○재단의 사무국장(무보수)을 겸직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태백시○○관 시설장 겸직 현황

2. 장기요양기관 특정 목적사업 적립금 운용·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가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시설 ⊛⊛집 외 1개소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 및 사용계

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운영총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사용계획 보고 현황

3. ○○시설 후원금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29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하며,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田田센터에서 퇴사자(X) 선물

을 구입하면서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지정후원금으로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시설 후원금 집행 현황

4.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기준」(강원도)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표 4]와 같이 田田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2015년, 2017년에 ***,***원의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시설 1년 미만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현황

(단위: 원)

5. ○○시설 주요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 제30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5]와 같이 ⊖⊖시설 태백시ㄹㄹ에서 식자재 구매를 하면서 거래금액이 *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유통업체 'ㄱㄱ'과 2015년, 2018년에는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16년~2017년에는 공개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5] ⊖⊖시설 주요 식자재 구입 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재단법인 ⊙⊙재단의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태백시ㄱㄱ관의 관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무국장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법인 및 산하 사회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며,

② 과지급한 보조금(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원은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특정 목적사업 적립 시 적립 및 사용계획 사전 보고를 철저 이행토록 하고, ⊖⊖시설에서 후원금을 집행할 때 정해진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며, 시설에서 주요 식자재 등 구매 시 관련 규정에 맞게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시설장 등 상근하여야 하는 종사자가 상근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회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시(△△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0.26.현재까지 사용한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건 총 **,***,***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1] 업무추진비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현황

2.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회 의원 경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의회비(205)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 9개 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적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경비는 의회비(205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면 아니 되는데도, [표 2]와 같이 의회비(205목)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비 총 **건 **,***,***원을 집행부 예산인 일반운영비(201목)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 성질별 분류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표 2]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회 의원 경비 집행 현황

3. 예산집행품의 지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품의),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며(원인행위),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 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지출)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을 준수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품의를 하고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했음에도, [표 3]과 같이 “5급 승진리더과정 간담회 급식비” 등 총 **건 *,**,***,*** 원을 지출하면서 실제 신용카드사용일 보다 2일에서 6일 지연하여 예산집행품을 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산집행품의 지연 현황

4. 공공기록물 전자적 생산·관리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되,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

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①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②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 ③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 한 후, ④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⑤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접수와 동시에, 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획득된 시점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등 각종 지출을 위하여 기안한 문서에 대해 결재를 득한 후에는 문서등록대장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4]와 같이 2015. 5월부터 2017. 3월까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면서,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생산하지 않거나, 내부결재가 끝난 후 문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등 기록물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의한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체계적·전문적 및 효율적 관리를 소홀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기록물 등록절차 미 이행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시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라며,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 기록물이 관리되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강 원 도

훈계·통보 요구

제 목 건설기술용역 계약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현 ㉿㉿소)	지방⊖⊖	Y
	② 태백시 ▲▲과	지방⊖⊖	AA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Z
	④ 태백시 ▲▲과	지방⊗⊗	AB
	⑤ 태백시 ▲▲과	지방⊙⊙	AC

내 용

지방⊖⊖ Y는 2015. 1. 19.부터 2016. 6. 30.까지, 지방⊖⊖ AA는 2016. 7. 1.부터 현재까지 태백시 ▲▲과 ㉿㉿담당의 직위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였으며 지방⊖⊖ Z는 2015. 6. 16.부터 2016. 6. 30.까지, 지방⊗⊗ AB는 2016. 7. 1.부터 2018. 3. 26.까지, 지방⊙⊙ AC는 2017. 9. 26.부터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서 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9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제1항제1호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자들은 건설기술용역을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1. Z, AB, AC의 경우

그런데 위 사람들은 용역 계약업무 실무를 담당한 2015. 6. 1.부터 2018. 9. 30.까지 총 ***건(계약금액 **,***백만 원)의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상신하면서 입찰참자자격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상급자인 ㉠㉠담당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 및 계약 체결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Y, AA의 경우

위 사람들은 계약업무를 총괄관리 한 2015. 6. 1.부터 2018. 9. 30.까지 총 ***건(계약금액 **,***백만 원)의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재하면서 용역계약 업무 실무자인 Z, AB, AC이 입찰참자 자격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가하지 아니한 채 공고하는 것으로 하여 기안을 상신하였음에도 그대로 검토 또는 결재하였으며,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실무자인 Z, AB, AC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안문을 상신하자 그대로 검토하거나 결재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관련자들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철저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위 관련자 중 AB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의계약은 물론 입찰 공고 시에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업종의 등록면허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건설기술 진흥법」의 경우 2013. 5. 22. 개정되어 2014. 5. 23. 전면 시행된 만큼 숙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4. 6. 20. 강원도(●●과)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건설기술용역 공고) 협조 요청”건으로 관련문서가 시행된 바 있고, 2015. 6. 1.부터 2018. 9. 30.까지 기간 중 태백시 관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인 (자)건축사무소●●의 경우 “ㄷ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총 **건의 (계약금액 ***백만 원)의 용역 계약을 태백시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하는 등 2015. 6. 1.부터 2018. 9. 10.까지 총 **개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체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존재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인하여야 하는 만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관련자들 중 AB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업종의 등록면허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6. 12. 20. 체결한 “태백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단은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등록과 함께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 이러한 사실은 용역계약서에도 나타나 있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제출한 지출증빙 서류에 따르면 ■■■단이 등록한 11개 업종 중 10개의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업종 등록을 제외한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에만

붉은 계통 펜 종류로 별도로 체크한 만큼 A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관련자들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태백시 종합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2015. 6. 1.부터 2018. 9. 30.까지 태백시와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부 계약상대자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표] 건설기술용역업 미등록자의 건설기술용역 업무수행 혐의 대상 (일부 사례)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위 [표]의 혐의 업체를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이 전면시행 된 2014. 5. 23. 이후 태백시에서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전수조사 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하거나 수의계약대상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강 원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리 경관개선 특화사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과

징계대상자 ① 태백시 ▲▲과 지방⊖⊖ AA

② 태백시 △△과(현 §§장) 지방■■ AD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AE

④ 태백시 △△과(현 ▽▽과) 지방△△ AF

※ 훈계대상자 태백시 ▲▲과(현 ◁▷과) 지방⊗⊗ AG

징계종류 경징계

내 용

태백시에서는 2014. 5. 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지정된 후 [표]와 같이 “■■리 경관개선 특화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리 경관개선 특화사업 개요

1.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태백시 재무회계규칙」(2017. 5. 4. 규칙 제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본청 재무관은 부시장으로, 분임재무관은 ■■장 및 각 □□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별표 1) 및 ▲▲과 사무분장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과 분장사무로 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총괄관리는 ㉹㉹ 담당 직위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추정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제조·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부시장)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제조·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각 □□장(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 중 재무관(부시장)이 지정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처리하거나 그 외의 경비는 ■■장(분임재무관)이 이를 처리하여야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이라 한다) 제5장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사. 평가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표] 입찰 및 계약의 절차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표]와 같은 업무 흐름에 따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 결과를 반영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은 계약부서(▲▲과)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는 위 사업 사업부서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제조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구상(안) 보고서를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여 계약의 방법은 입찰로 하고 낙찰자 결정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권한 없이 처리하였다.

아울러 태백시(▲▲과)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부서이며, ▲▲과장 및 ㉠㉠담당은 「지방회계법」 및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태백시장으로부터 직위를 지정받아 재정보증이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인 계약담당자로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과)에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구상(안) 보고서에 협조하였고, 입찰 및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과)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다음 1항목부터 5항목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계약업무를 어지럽게 하였다.

2. 계약목적물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식 불투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에서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물품계약의 일반조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계약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계약업무 절차 등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또는 물품·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계약목적물을 분류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등 계약방법의 결정과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결정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과로부터 위 사업 입찰공고를 의뢰받아 이를 공고하면서 공고서와 규격서를 첨부하였으나, 공고서에는 계약목적물의 종류를 물품으로 하였음에도 규격서 중 제안요청서에는 경관개선 계획 및 실시

설계 등 용역을 사업범위에 포함하였으며, 과업지시서의 경우에도 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문서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도록 하면서, 착수 시 기술용역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책임범위에 용역을 포함하거나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예산내역서, 산출조서 등을 성과품 목록으로 하여 이를 납품하도록 하였고, 가격제안서 작성요령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위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공사인지, 물품 또는 용역인지 불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제공 용역 제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7. 9. 20. 일부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항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8. 12월 현재 강원도를 포함한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또는 제10항)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태백시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가 없는 만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태백시소속 공무원을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거나 태백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사유로 사업부서(△△과)에서 직접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으면서 계약부서(▲▲과)의 협조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태백시 소속 공무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없음에도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계약업무를 저해하였다.

나. 평가결과 미공개 등 위원회 운영 부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기한 및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모든 입찰 참가희망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에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위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면서 그 내용에 사업(현장)설명회 참가업체만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참가신청서는 FAX로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2개의 업체는 FAX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의 경우에는 FAX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였으며, △△과장은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성평가 (주관적 평가)를 하면서 작품A의 경우 특징성, 이야기성이 부족하고 작품B는 이야기성이 있는 반면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심사하였음에도 평가점수는 모두 동일점수인 50점을 부여하였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해야 할 계약업무를 저해하였다.

또한, 입찰 공고서 본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모든 제출서류에는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업체의 경우 제안서에 자신들의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표기를 하였고, ▲▲업체는 위 사업 전 △△과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이 포함된 만큼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채 평가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계약 업무를 저해하였다.

4.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허용 부적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 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공동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위 사업을 공고하면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되는 것으로 공고한 만큼 협상적격 1순위인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 중 ▲▲업체와 ○○

모두 산업디자인 업체이며, 분담내용은 ▲▲업체 20%, ○○ 60%로 2개사 모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었고, 분담내용의 비중은 ○○가 큰 만큼 ○○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체(공동수급체)에서 ○○가 아닌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는 공동수급체 협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5. 계약변경 및 기성대가 산정 업무처리 불투명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계약변경 전에 이미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상대자의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에 대하여 이를 기성대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6. 28.을 준공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억*천만 원으로 하였음에도 당초 준공기한 보다 하루 앞선 2017. 6. 27. 16:32에 계약금액은 *억*천*백만 원 증액하고 계약기간은 **일 연장하는 것으로 기안을 상신하였고, 같은 날 17:23에 과장이 기안을 반려하자 17:24에 기안을 다시 상신하면서 계약금액을 *억*천*백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상신하였으나, 18:30에 이를 다시 반려하자 18:35 에 계약금액은 *억*천*백만 원 증액하면서 계약기간은 45일 연장하는 것으로 기안(계약금액 증액 폭은 증가, 계약기간 연장 폭은 축소)하여 ▲▲과 ㉞㉞담당 등의 협조를 거쳐 2017. 6. 28. 13:21 경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으며, 2017. 6. 28. 계약변경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당초 계약금액인 *억*천만 원을 초과한 *억*천만 원을 기성대가로 청구 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등 계약변경 업무를 불투명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앞서 기술한 계약변경 업무처리 전에 이미 당초 계약금액 *억*천만 원보다 *천8백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물품제조가 이루어졌으며, 위 기안상신 및 반려 등 처리과정 이전에 이미 위 *천*백만 원을 포함한 *억*천*백만 원을 기성대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장까지 검토하다가 2018. 6. 29. 이를 중단처리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 전에 이미 물품을 제조한 대가 중 *천만 원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성대가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AA(㉞㉞담당), AG(계약 실무담당자)의 경우

지방㉞㉞ AA는 2016. 7. 1.부터 현재까지 ▲▲과 ㉞㉞담당직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를 총괄관리 하였으며, 지방㉞㉞(현 ◁△과, 지방㉞㉞)

AG는 2016. 7. 1.부터 2017. 9. 25.까지 실무담당자로서 물품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관련자는 앞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지방계약법상 계약담당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부서 담당자(위 사업의 경우 △△과 사업담당자)도 계약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② 계약에 관한 사무는 시장 결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③ 부서별 분장업무 또한 시장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근거로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AG의 경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함)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역시 계약의 방법이기는 하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한해 시장이 이를 직접 결정하고 ⑤ 위 사업건의 계약은 시장이 고유권한으로 직접 처리한 것으로 계약방식 또한 시장이 직접 결정한 것이며 ⑥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이와 관련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⑦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의 적정 여부는 검토해 보지 않았으나 예규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입찰공고에서 잘못되어 나갔다면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AG의 경우에도 공동협정서대로 허용하면 된다고 함) ⑧ 계약체결의 의미는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면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부서에서 ▲▲과로 계약을 의뢰하는 것 역시 날인을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⑨ 계약변경 검토 시 산출내역까지 볼 수는 없으나 산출단가의 적정 여부는 뒤적뒤적 하였고 ⑩ 위 사업 관련하여 결재권자의 사인이 모두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지적사항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와 AG의 이러한 주장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

무원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등으로서 그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회계관계공무원
 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과장은 일상경비 중 재무관 지정 경비에 한정하고 있고 ②, ③ 「지방
 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태백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④~⑥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낙찰자 결정기준 3. 용어의 정의 “가.
 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에 관한 사무를 태백시장이 직접 처
 리한 것은 아니며 ⑦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허용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관련
 예규와 다르게 공고한 바가 없으며 ⑧ 계약체결은 앞서 [표]에서와 같이 계약체
 결에 따른 일련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계약서에 “날인 하는 행위”만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⑨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⑩ 앞서 ①~⑨ 주장의 사정
 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1) 계약부서에서 공고한 입찰공고의 경우 계약목
 적물이 명확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2)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소속 공무
 원을 포함할 수 없음에도 업무담당과장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하였고 (3) 입찰공
 고 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업체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였으며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하였고 (5)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허용 규정의 경우 강행규정
 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6) 계약변경 전 미리 추진
 한 사업물량에 대한 대가를 사후에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를 기성대가로 산정하
 였고 (7) 관련부서 간 실무자(담당 및 담당자)의 충분한 소통 등이 이루어져 계

약업무가 진행되었다는 △△과장의 주장을 감안할 때 위 관련자의 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관련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나. AD(△△과장), AE(□□담당), AF(사업 실무담당자)의 경우

지방☆☆ AD은 2015. 4. 16.부터 2017. 7. 3.까지 △△과장(현 §§장, 지방▣▣)의 직위에서 도시건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지방□□ AE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과 □□담당(현 ▽▽과 □□담당) 직위에서 □□사업 업무에 관한 실무를 총괄관리 하였고, 지방△△ AF은 2015. 6. 16.부터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서 □□사업 총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관련자는 앞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 AD은 ① 계약목적물의 종류는 물품제작이며, 계약의뢰 시 담당자의 오기로 작성된 기안문에서만 ‘공사계약의뢰’로 표시된 것이며 ② 세부공정은 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물제작설치공사, 기타공사, LED경관조명 제작설치, 시설물설치 등으로 세부공정 일체가 물품제작 설치에 해당되고 물품제작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은 공사에 해당하며 ③ 공사부분으로 구분한 것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물품제작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 공사로 판단한 것이고 ④ 낙찰자 결정기준을 위한 제안서평가에서 정량지표 및 정성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가격평가는 회계부서에서 실시하여 정량지표 및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며 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실무자(AF) 보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고 ⑥ 평가위원회 때 제안서를 보아 특정한 기록, 암호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⑦ 평가점수 미공개는 실무자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⑧ 위 사업은 계약부서 협조 하에 시장

결재로 결정한 사안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위임 받았다고 실무자가 보고하여 그대로 결정하였으며 ⑨ 지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아 참여업체 간 분담이행협정서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⑨ 계약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검토자의 부재로 보고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반려와 상신한 계획서의 아이템 보완을 위한 반려였으며 ⑩ 1차 설계변경까지 계약변경 사항이 없는 품목은 납품한 품목, 추진과정에 변경요인이 발생한 건은 추진계획서, 구두보고를 통해 승인·납품을 한 품목에 대하여만 설계변경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D의 이러한 주장은 ①~③ 같은 기간 중 업무담당과장으로서 검토하거나 결재한 다른 기안은 공사와 물품, 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앞서 자신의 “②~③”의 주장과 모순이 있고, ▲▲과로 제출한 입찰공고에서도 “2. 계약목적물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식 불투명”에서와 같이 계약목적물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단순 오기로만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④~⑤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검토권자로서 검토하였고 가격평가는 회계부서에서 실시하지 않고 ▲▲과에서 하였으며 ⑥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인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 이미 담당과장으로서 제안서 실물(책자)에 직접 결재를 하였고 ⑦~⑧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독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해당하며 ⑨ 관련 예규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⑨~⑩ 계약변경 전 구두로 승인한 사업물량을 사후 계약변경을 통해 기성대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AD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AE과 AF은 AA 및 AG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AE의 경우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②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소속을 유추할 수 있는 표기가 있었던 것은 몰랐고 ③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④ 앞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AF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 ⑤ 업무 처리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은 있었던 것 같으며 기안을 한 담당자 및 결재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AE이 추가 주장하는 ②~③의 경우 이를 담당의 직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AE과 AF의 주장은 앞서 AA, AG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관련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AA, AD, AE, AF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AG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지방약법 등 관련 법령의 연찬 강화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강 원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시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 **건 **,***천 원을 착오 감면하였거나 부과 누락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누락 현황

1.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미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00조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위 감면조항으로 감면신청이 접수 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감면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해당재산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 또는 임대하고 있지 아니한지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표 2]와 같이, 회사성립일이 2011. 3. 11.인 꺄꺄(대표자: AH)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4. 12. 31. ㉠㉠동 ×××-×외 10필지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2016. 3. 29. ㉡㉡(대표자: AH)에 매각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동일한 고정자산, 동일한 대표자,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2014. 7. 17.설립된 ㉡㉡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실시하였고,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적정 현황

또한, ㉢㉢가 2014. 5. 7.부터 2015. 1. 16.까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

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으나, 「붙임1」 확인 사실에 따라 ㉠㉠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점, 설령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추징대상이 된 점, 감면 이후 본격적인 제조활동을 하지 못하고 창고 등으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표 3]와 같이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현황

2. 농업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분 추징 미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표 4]와 같이 ㉠㉠주식회사가 2017. 3. 23. ㉠㉠동 ×××-×번지 토지를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8. 10. 23. 현지확인 결과, 건축물을 신축중이나 완공되

지 아니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4]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현황

3. 임시건축물 및 저온창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임시용건축물 및 저온저장고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ㄱㄱ외 16명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에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AI외 57명이 저온저장고를 취득하면서, 감면이 적용되는 취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외의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표 5]과 같이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임시건축물 및 저온창고 취득세 부과 누락 현황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점주주는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세율 2%를 적용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태백시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둔 법인의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표 6]과 같이 ▽▽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과점주주 2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 및 추정세액 현황

5.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다만, 판결문 또는 법원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표 7]과 같이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 증가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건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천 원(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추정세액 현황

6. 불법건축물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7조에 따르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 이와 유사한 시설이면 족한 것이라 하겠고, 시설물 또한 그 소유자가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태백시에서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표 8]과 같이 AJ 외 6명이 불법으로 신·증축하여 사용중이나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총 *,***천 원(취득세 *,***,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8] 불법 건축물 취득세 과세누락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시정] ① 지방세 감면분 미추징 및 부과누락한 *개 세목 **건 / **,***천 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예고 후 즉시 부과·징수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지방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과세·감면 신고분에 대한 감면 검토 및 유예기간이 경과된 감면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강 원 도 통 보

제 목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지침 마련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시에서는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 업무 추진시 계약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2016년 *,***건(**,***백만원), 2017년 *,***건(**,***백만원), 2018년 9월말 현재 기준 1,104건(**,***백만원) 등 매년 발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태백시 연도별 계약건수 계약금액 현황

그러나 태백시 관내의 지역업체 계약률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계약건수 대비 50%, 금액대비 28%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역 내 산업기반의 취약성과 업체들의 영세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태백시(▲▲과 △△팀)에서는 지역업체 계약 수주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업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고, 그 노력의 결과로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마련, 2017. 1. 5.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운영에 따른 주요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주요내용 및 성과

1. 설계서·규격서 작성시 관내 생산제품 최우선 반영

지역 내 생산 유통물품, 업종(면허) 한계 등으로 관내 업체 수주율이 저조한 데,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내 생산 대체·대용품을 발굴하고, 제품의 규격, 내구성, 특성 비교 및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관내 생산제품을 최우선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지역업체 생산제품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200만 원 이상 물품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역생산품 미 반영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가격 등에서 현저히 뒤지지 않을 경우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였다.

2.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허용된 법·규정 적극 활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종합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 비율을 49%까지 확대토록 입찰공고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고,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주계약자관리 공동도급을 활용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주계약자로,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 공동참여토록 하여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주력함에 따라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율이 2016년 *건에서 2017년 **건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물품 구매시 지역내 생산품이 조달단가 계약된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유를 명시토록 하였으며, 특허, 신기술, 특정 규격, 사양서 등은 반드시 계약심사 및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타 지역업체 보유의 특허, 신기술 협약 등을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활용토록 권장하였다.

3.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운영 자체 기준 마련

계약법규상 2천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 전체에 대해 100% 관내업체 수의계약 원칙을 지키되, 관내업체가 없거나 사안에 따라 외지업체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을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요구할 경우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수의계약 시 실제 영업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태백시 관내 지역업체 계약률이 2016년 50%에서 2017년 60%로 10%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보조사업 입찰대행 확대 추진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태백시에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건실한 업체 선정, 관내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찰대행 확대를 추진하였는데,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입찰대행을 원칙으로, 50% 이상인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시 관내업체 이용 문구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명시하도록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 선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러한 계약업무 추진 시 일관성·통일성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태백시 관내업체 계약률이 제고되었고, 영세한 지역업체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 [통보] ① 「관내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소

내 용

태백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등 미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 ◁◁과, ◇◇과,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태백시 ◆◆동 산**-* 등 6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AK 등 *명이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대부계약 없이 경작하여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았으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및 사용·수익허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1]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대장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소)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소)에서는 [표 2]와 같이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하는 태백시 ◆◆동 ×××-××번지 등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행정재산 수의계약 미대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3. 일반재산 대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

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태백시 ◆◆동 ×-×××번지 등 **필지의 토지와, 대장가격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센터 , ◎◎사무소 및 ○○관사 등 건물 *건에 대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등 일반재산의 대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일반재산 수의계약 미대상 대부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시 정] ①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AK 등 [표 1]에 기재된 *명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권리·손해보전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
★★소, ◀◀관, ⊕⊕동, ⊖⊖동, ⊕⊖동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현 ◆◆동) 지방☆☆ AL
② 태백시 ▲▲과 지방⊖⊖ AM
③ 태백시 ▲▲과(현 ◆◆과) 지방⊗⊗ AN

내 용

태백시 ◆◆동 동장 AL는 2015. 11. 30.부터 2018. 1. 9.까지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총괄지휘·감독자로 근무하였고, 태백시 ▲▲과 지방⊖⊖ AM은 2015. 1. 19.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공유재산의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며, 태백시 ◆◆과 AN은 2015. 6. 16.부터 2018. 1. 9.까지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태백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부서로서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부서로서 실·과·소 재산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누락 및 권리·손해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1]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2. 공유재산 취득·처분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취득의 경우와 2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태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으로서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으로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 ★★과, ★★과, ●●과, ◀▶관)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관)에서는 [표 2]와 같이 ▲▲동 산× 소재 ×× ◻◻관을 취득(증축)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태백시(◆◆과, ★★과, ★★과, ●●과, ▶▶관)에서는 ◆◆동 ××-× 등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대장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공유재산심의회 미심의 취득·처분 현황

3.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 ★★과, ◇◇소, ◀▶관, ★★소, ⊕⊕동, ⊗⊗동, ⊖⊖동)에서는 [표 3]과 같이 **건의 공유재산(건물)을 취득한 후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현황

4. 공유재산 손해보전 미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 ▨▨과)에서는 [표 4]와 같이 각각의 재산관리관들이 취득·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태양광시설 등 *건에 대하여 2018. 10. 26. 감사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표 4] 공유재산 손해보전 미조치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②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표 3]에 기재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하시고, 공제 또는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표 4]에 기재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전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③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업경영인단체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과 지방◆◆ AO

내 용

지방◆◆ AO은 2010. 7. 19.부터 현재까지 태백시 ◇◇과에서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실무자로서 [표 1]과 같이 농업경영인 단체 및 새농촌 마을사업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업무를 처리 하였다.

태백시(◇◇과)에서는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업무, 마을주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농업경영인 단체 및 새농촌 마을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지방재정법」 제32조6,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3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하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에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이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사업의 적합 여부, 자부담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증빙되었는지 철저히 심사 후 정산검사를 확정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태백시 ⊕⊕행사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시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입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행사 지원 사업 등 3개 보조 사업 정산서류는 지출증빙자료 일부가 분실 또는 첨부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㉞㉞사업은 사업종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농업 단체, 마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현황

따라서 지방㉞㉞ AO은 [표 2]와 같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017년 ㉞㉞사업 정산검사를 조속히 확정하시고,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강 원 도

시장·주의 요구

제 목 ○○ 조성사업 예산집행 및 감독업무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조성사업 추진현황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운영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 예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부, 2017.2.23.)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 및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적 요건 등의 구비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

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가능 여부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가능여부 등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이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되는 ‘㉠㉠ 조성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이 되었을 때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교부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얻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 조성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강원도에 지역개발계획 반영요청(2015.8.27.)하였으나, 지역개발계획은 강원도에서 지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 조성사업의 승인여부 및 승인시기 등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을 뿐 아니라, 사업부지의 98%가 국유림으로 산림청은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협의 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국유림의 확보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등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의 구비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표2]와 같이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업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는 지역개발계획 승인(2017. 12.28.) 후에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당초 사업비 투자계획 대로의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도 ※※부의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비 투자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 운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예산투입 현황 및 집행내역

2. ○○ ○○사업 감독업무 부적정

태백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 부지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 사업 추진현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감독자는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제34조(품질관리 지도·감독) 및 제43조(용역의 준공)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설계의 품질향상,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 착수 후 설계기준·표준시방서·관련 법령, 제기준·유사설계사례 등 설계입력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

입력 자료에 따라 설계된 설계출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용역성과품과 함께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 따르면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이 있을시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① 터널 굴착 비 단가 과다적용에 따른 설계 변경 부적정, ② ⊙⊙(록볼트, 슛크리트) 공법 과다설계 등으로 *****,***천 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18.10.26.)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용역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가. 터널 굴착 비 단가산정에 대한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태백시 요청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를 근거로 도급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터널 굴착단면의 정형화 및 라이닝 타설에 대한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증가된 발파암 절취 물량에 대한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갱도 내 기계굴착에 필요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인력시공으로 산정된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표 4]와 같이 *****,***천 원(제경비 포함)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터널면 굴착비 정산내역

나. ⊙⊙ (록볼트, 슛크리트) 공법 경제적 설계 검토 소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갱도 내·외부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결함 정도를 파악·분석·평가하고 지질구조, 구조물의 상태·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실시설계용역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제시된 공법을 토대로 보강공법을 적용하되 최대 축력을 허용할 수 있는 록볼트 배치 간격과 최대 압축 응력을 허용할 수 있는 슛크리트 두께를 결정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태백시(◁◁과)에서는 ‘⊙⊙ 부지 내 ⊙⊙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갱도 내 보강공법의 적용과 록볼트 설치간격, 슛크리트의 두께산정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6개 Type의 보강패턴에 대한 보강방법 및 수량을 그대로 인용하여 설계에 적용하면서 설계VE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을 거쳤다는 사유로 안전성 검토 여부만 시행하고 최적의 록볼트 간격 및 슛크리트 두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표 5]와 같이 *****,***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과다 반영되는 등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착공 후 설계용역에 따라 A갱도(L=363m)를 시공완료 함에 따라 [표 6]과 같이 *****,***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절감하지 못하고 과다 시공하게 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 ○○ 공법 재 검토 현황

[표 5] ○○ ○○ 공법 조정에 따른 정산내역

[표 6] A갱도 과다 보강 정산내역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시정] 「○○ ○○ 공사」에 과다 계상된 부분 중 A갱도(록 볼트, 슛크리트) 기 시공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총 ***,***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보 조금 교부신청 및 예산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태백시 ○○과 지방⊖⊖ AP

② 태백시 ○○과 지방⊖⊖ AQ

내 용

태백시 ○○과 지방⊖⊖ AP은 2016. 4. 18.부터 현재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태백시 ○○과 지방⊖⊖ AQ은 2016. 7. 15.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태백시(○○과)에서는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표 1] 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1] 도로점용(굴착)허가 처리현황(2015 ~ 2018. 10월 현재)

1. 도로관리심의회 미 운영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62조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를 굴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①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②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 ③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허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이행한 후 도로점용허가 시 심의·조정 내용을 반영한 후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도로를 굴착하려는 자로부터 2018년도에 *건의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붙임]과 같이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채 심의 없이 도로점용(굴착)허가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준공검사 미 시실 등 사후관리 소홀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굴착공사 시행자는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

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 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마치고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을 시 도로관리청은 준공도면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요시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굴착공사 시 시행자가 허가조건 및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사완료시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준공도면을 제출받아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감사일(2018. 10. 26.) 현재까지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 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착공계도 제출받지 않고 준공검사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확인을 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굴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도로점용(굴착)허가 점용료 산정·부과 부적정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도로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관 등 관로를 매설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별표3의 2호에서 정한 준공 후 영구점용료와, 별표3의 8호에서 정한 공사 중 일시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전기관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굴착)허가 건에 대한 점용료 산정 시 별표3의 2호 및 8호를 적용하여 일시점용료와 영구점용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전기관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일시점용료를 별표3의 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3의 10호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표 2]와 같이 부과금 산정이 잘못 되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용료 부과가 잘못된 도로점용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2016-55)은 ***천 원이 과다 부과되고, ◆◆(2016-65)은 *,***천 원이 미 부과 되었음에도 사업의 준공으로 실제 공사기간(굴착일수)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점용료 재 산정 및 적정 점용료를 부과·조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2] 도로점용료 재산정 현황

위와 같이 태백시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 지방○○ AP 및 업무 실무자 지방○○ AQ은 소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굴착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2018-184호)의 도로점용허가 건은 실공사일을 확인하여 일시점용료를 재산정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후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시고, 도로점용(굴착)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건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소홀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과(현 ▽▽과) 지방□□ AR

내 용

지방□□ AR은 2009. 4. 13.부터 2017. 1. 22.까지 도시계획 업무의 실무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2. 20.부터는 도시계획담당으로 임명되어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 총괄관리 하였다.

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및 조례 개정 소홀

도시계획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과에서는 2012년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요령”[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을 ○○과-7445(2012.6.27)호로 각 시·군에 관련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며 위호에 따르면 2012. 4. 15.일부터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방침을 받아 조속히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기능은 ①도시·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②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③도시·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④도시·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등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와 조직의 역할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2011. 4. 14.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도시·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등을 위해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 했어야 했다.

그러나 태백시(▽▽과)에서는 2015년도에 강원도가 실시한 태백시 종합감사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업무 소홀’에 대해 현지처분 요구(권고)을 받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주무관청인 강원도 ●●과에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지 않았고(현재까지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등 도시계획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위원의 제척·회피 관련 조례개정 소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심의추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라 ①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공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③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심의·자문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 법 조항이 신설(2011.4.14.) 되었으며 2012. 4. 15.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태백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추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야 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6. 5월 태백시 ▲▲과(현 ▽▽과)에서는 ‘태백 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 회의 구성원에서 제척하여야 함에도 회의참석 요청문서(본 회의에는 미참석하였음을 확인함)를 발송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및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를 조속히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시는 2015년부터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및 어린이 등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였다.

[사업개요]

- 위 치 : 태백시 ◇◇길 XX(◆◆동 XXX-XXX)
- 사 업 량 : 부지면적 1,361㎡, 연면적 871.77㎡(지상2층)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12월
- 사 업 비 : *,***백만 원(국 ***, 도 ***, 시 ***)

1.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9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예산의 심의·확정 등의 의결권을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제10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도서관 건립공사’를 [표1]과 같이 추진하면서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도 ▲▲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표1] ▶▶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현황

그 결과, 지방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득하지 않은 채, 예산 *,*** 백만 원(국***, 도***, 시***)이 2015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공시설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미이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한다)’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절차는 예비인증(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단계)으로 구분되나 본인증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예비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고,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취득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태백시(◆◆과)에서는 인증의무 제도에 대한 안내 문서를 각 부서에

송부하여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법률이 시행된 2015. 7. 29. 이후에 신축(설계중인 시설 포함)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태백시(★★과)에서는 '▶▶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감사일 현재(2018. 10. 26.)까지 본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위배하였으며, 이미 공사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BF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주의] ①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대상 공공시설물 신축 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공사 시행 후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건축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관 련 자 ① 태백시 ◀◀관(현 ◈◈과) 지방□□ AS

② 태백시 ★★과(현 ◁◁과, 지방⊗⊗) 지방◻◻ AG

내 용

지방□□ AS는 2015. 6. 16.부터 2016. 7. 1.까지 ◀◀관에서 실무담당자로서 ◈◈ ◉◉관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지방◻◻ AG는 2014. 2. 17.부터 2016. 1. 10.까지 ★★과 ◈◈팀에서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문화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담당인 지방⊖⊖ AT가 추진하던 ▶▶도서관 건립공사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백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2013. 6. 4.)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표1]과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표1]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사업현황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유사용역수행실적 확인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입찰안내서)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른 [별표1]과 [부표]에 의하면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르면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①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②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③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가. 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건

2015. 8. 19 공고된 “    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의 입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에서 용역사업의

규모(연면적 1,565㎡, 지상5층, ㉠㉠관 50실)와 주요시설(㉠㉠관, 식당, 다목적실, 휴게실, 기계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사항 중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보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면서 실적으로 제출한 용역의 건축물 용도, 용역수행 기간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상 연면적 1,565㎡의 규모로 증축하는 공사인 본 사업(㉠㉠ ㉠㉠관 증축공사)의 설계와 유사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인지를 평가하여야했다.

그러나 [별첨1]과 같이 태백시(㉠㉠관)에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면서 기존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사업, 보수공사 등의 설계용역을 예상 연면적 1,565㎡의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인 본 사업(㉠㉠ ㉠㉠관 증축)의 설계와 유사용역으로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용역실적에 대해 인정건수를 수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점수를 재산정하면 [표 2]와 같이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 ㉠㉠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표 3] ㉠㉠ ㉠㉠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재산정 결과*

나. ▶▶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건

2015. 4. 17. 공고된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의 입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에서 용역사업의 규모(지상2층, 연면적 800㎡)와 주요시설(자료실, 업무관리실, 학습실, 다목적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사항 중 담당건축

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보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공업무시설”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면서 실적으로 제출한 용역의 건축물 용도, 용역수행 기간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상 연면적 800㎡의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인 본 사업(▶▶도서관 건립)의 설계와 유사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인지를 평가하여야했다.

그러나 [별첨2]와 같이 태백시(★★과)에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면서 연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사용 중인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개보수공사, 내진보강공사 등의 설계용역을 예상 연면적 800㎡의 규모로 신축하는 공사인 본 사업(▶▶도서관 건립)의 설계와 유사용역으로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용역실적에 대해 인정건수를 수정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점수를 재산정하면 [표 4]와 같이 평가점수가 변경되며,

[표 4] ▶▶도서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배점한도(100점)=사업수행능력평가(35점)+지역가점(3점)+경영(2점)+입찰가격(60점)”로 재평가하면 [표5]와 같이 적격여부가 변경되어 낙찰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5] ▶▶도서관 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재산정 결과*

2. 설계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의 용역참여 확인 소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에 의하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태백시(◀◀관)에서는 ‘◻◻ ◻◻관 증축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통해 태백시 소재 ◻◻ 대표 AU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5. 10. 26. 설계용역 착수계를 접수하였으며, [별첨1]과 같이 접수된 착수계를 보면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참여 건축사(보) AV(1965.9.17.)이 아닌 AW(1962.9.13.)로 되어있다.

또한 태백시(★★과)에서는 ‘▶▶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통해 태백시 소재 ◻◻ 대표 AU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5. 6. 5. 설계용역 착수계를 접수하였으며, [별첨2]와 같이 접수된 착수계를 보면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참여 건축사(보) AV(1965.9.17.)이 아닌 AW(1962.9.13.)로 되어있다.

그러나 태백시(◀◀관, ★★과)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인 참여 건축사(보) AV이 반드시 해당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표6]과 같이 계약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 대표 AU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6]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의 용역참여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대상자로 경력 및 실적을 인정받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나, 참여건축사(보)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축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유사용역실적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낙찰된 업체와 계약 이후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력 및 실적을 인정받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시 ○○과(현 ⅢⅢ소) 지방회회 AX

내 용

태백시(○○과)에서는 2015년부터 시가지 도로와 보도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교체) 공사를 추진하였다.

지방회회 AX은 2015. 6. 16.부터 2018. 9. 18.까지 ○○과에서 가로등 및 보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1]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현황

1.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먹거리길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보안등 제어반기초(28개) 수량이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고, 제어반 2개소에 대한 제어반기초(2개) 수량만 설치하였는데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시 확인 없이 시공자가 신청한 내역대로 준공하여 **,***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2] 준공금 과다지급 산출내역

2.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6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야하고, 산업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사용항목과 사용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붙임 1]과 같이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 (2018.10.26.)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 등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사안내·경고표지판, 경계웬스, 차량 유도등, 조도계, 절연저항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실 확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안전 관리비를 정산 준공하여 총 *건에 약 *,***천 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3.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설계용역 부적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과)에서는 공사내용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전기설계 면허가 있는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런데, 태백시(○○과)에서는 [붙임 2]와 같이 발주한 공사 *건의 설계 용역

을 전기분야 설계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별도 발주하지 아니하고, 시가지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토목분야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가 지급 없이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여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지 못한 설계 도서를 납품받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전기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태백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 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과다 지급된 준공금과 목적 외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천 원 상당을 회수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기설계 자격·면허가 있는 업체에 설계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계약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태백소방서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처 분 요 구 서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 액 (천원)	
계				계 시정 1 주의 3	계 회수	***	계 훈 계 1
1	태백소방서 (☆☆과)	'15~'18	소방공무원 징계업무 소홀	주의			-
2	태백소방서 (☆☆과)	'15~'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3	태백소방서 (★★과)	'15~'18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및 교육훈련 감독 소홀	시정	회수	***	훈 계 1
4	태백소방서 (★★과)	'15~'18	감염성 질병 접촉 보고 등 구급 업무 소홀	주의			-

[일련번호: 1]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업무 소홀

기 관 명 태백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 통보된 소속직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되고, 공무원위원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표 1]과 같이 공무원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장을 임

명하지 않는 등 공무원위원을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정 현황

2. 비위공무원 징계사유 조사 소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표 2]와 같이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통보된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 혐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몇 회인지를 알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비위공무원 사법기관 공무원범죄 통보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소방서장은

[주의]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규정에 따라 임명하시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 시 필요한 조사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태백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예산편성 및 계약·지출·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지원경비(301-03)는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경비로 소집수당, 활동비 지원에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401)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후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원인행위)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 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태백소방서(☆☆과)에서는 [표] 와 같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음에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비 *건 *,***천 원을 시설비(*건, *,***천 원), 사무관리비(*건, *,***천 원)에서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203-01,203-03)에서 집행하여야 할 경비 *건 ***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건, ***천 원을 집행, 의소대지원경비(301-03)에서 *건 ***천 원을 세출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시설비 등 집행현황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의무소방원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대상 및 집행금액 등 의사결정 없이 2015. 5월부터 2018. 9월까지 총 ***건 **,***천 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건을 현금영수증 카드로 처리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태백소방서장은

[주의] 향후 세출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품의행위 없이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및 교육훈련 감독 소홀

기 관 명 태백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태백소방서 ●●119안전센터 지방○○ A

내 용

태백소방서(★★과)에서는 관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매월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등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 A는 2014. 9. 1.부터 2016. 7. 3.까지 ●●119안전센터장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교관 등 관련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고,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태백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임무를 수행했을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소집청구시 관련 항목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의용소방대 임무와 관련이 없는 하천 정화 활동에 대하여 총 *건 ***,***원의 소집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1]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부당 수령 현황(2015~2018)

태백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시 현장에서 교육훈련의 교관으로 관할 센터장이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2]와 같이 2016. 4. 16. 정기교육 훈련에서 관할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같은 시간 ◎◎리 하천 정화활동을 하였음에도, 의용소방대 정기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 및 봉사활동 현황(2016. 4월)

조치할 사항 태백소방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 *건 ***,***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

②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이 규정대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감염성 질병 접촉 보고 등 구급업무 소홀

기 관 명 태백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태백소방서(★★과)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1. 감염성 질병 접촉 보고 및 구급대원 추적관리 소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이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등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 일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백소방서(★★과)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 5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 까지 119구급대를 운영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고, [표 2] 와 같이 2016.

4. 26. 객혈을 호소하며 병원이송을 요청한 결핵환자 등 총 **건의 감염성 환자와의 접촉 건 중 *건에 대하여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를 아니하였으며,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건의 구급대원에 대하여 발병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지 못 하였다.

[표 1] 119구급대 운영 현황

[표 2] 감염성 질병 등 접촉보고 및 추적관리 현황

2. 구급 이송거부·거절확인서 작성 소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에 따라, 소방청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의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에 따라,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구급요청을 거절한 경우와 응급환자(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백소방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2015. 5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119구급대를 운영하여 총 ***건의 구급거절·거부 구급출동을 하였고,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구급요청을 거절한 경우와 응급환자(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 ***건에 대하여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구급 이송거절·거부확인서 작성 현황

조치할 사항 태백소방서장은

[주의] ① 구조·구급활동 중 감염성 질환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시 보고에 철저를 기하시고, 감염성 질병 등에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반드시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② 구조·구급활동 중 병원이송 거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미 이송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강 원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소방학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강원소방학교(☆☆과)는 우수한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문교육 결과를 통보할 때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지휘역량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등의 성적우수자는 보직, 승진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교육성적이 불량하여 낙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퇴교된 사람, 사이버교육 등 미입교, 미이수자는 징계처분 등 별도의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현황

그럼에도, 소방학교(☆☆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5. 5월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에 통보함에 있어 ***개 과정 중 **개 과정에 대하여 통보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교육성적 우수자 인사우대 및 전문교육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이수시간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에도 ***개 과정의 이수시간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강원소방학교장은

[주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 사항 및 통보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